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정책실 하부조직인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이관하고, 각종 소득보장 제도의 연계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금정책국을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연금정책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4.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운영지원과·인사과·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정책국·인구정책실·연금정책국”을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10.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
한 사항
16.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7.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
20.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1.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3.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27.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2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0.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
항

31.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
체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인구정책실)”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구정책실”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2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에 제31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
모델 개발

3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33.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35.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36.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 3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 38.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 3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40.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 4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
항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 정책실, 장애인정책국, <u>인구정 책실</u> , <u>연금정책국</u> , 사회보장위 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 <u>인구·사 회서비스정책실</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 (생 략)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차관은 <u>운영지원과·인 사과·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 정책국·인구정책실·연금정책 국</u>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 한다.	② ----- <u>운영지원과, 인사 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 책국,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u> ----- ----- -----.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①·② (생 략)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u>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u>	1. <u>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u>
2. <u>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 항</u>	2. <u>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 항</u>

3. <u>삭 제</u>	3. <u>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u>
4. <u>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u>	<u>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u>
<u>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u>	<u>관한 사항</u>
5. <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u>	4. <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u>
<u>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u>	<u>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u>
<u>항</u>	<u>항</u>
6. <u>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u>	5. <u>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u>
<u>여체계에 관한 사항</u>	<u>여체계에 관한 사항</u>
7. <u>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u>	6. <u>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u>
<u>수립</u>	<u>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u>
8. <u>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u>	<u>한 사항</u>
<u>수립 및 운영</u>	7. <u>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u>
9. <u>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u>	<u>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u>
<u>·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u>	<u>진에 관한 사항</u>
10. <u>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u>	8. <u>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u>
<u>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u>	<u>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u>
<u>사항</u>	<u>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1. <u>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u>	9. <u>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u>
<u>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u>	<u>수립</u>
<u>사항</u>	10. <u>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u>
12. <u>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u>	<u>의 수립 및 운영</u>
<u>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u>	11. <u>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u>
<u>에 관한 사항</u>	<u>·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u>
13. <u>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u>	12. <u>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u>
<u>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u>	<u>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u>
	<u>사항</u>

가 등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 ·
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6.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
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
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
한 사항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 ~ 28. 삭 제

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
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
안 수립 및 총괄·조정

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
·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
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
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
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
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
가 등에 관한 사항

16.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 ·
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7.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
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

20.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1.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
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3.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27.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 서비스에 관한 사항

2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0.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제11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

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의5. (생략)

30의6. ~ 30의13.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협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3명-----.

② ----- 3명-----
-----.

③ -----
--.

1. ~ 30의5. (현행과 같음)

3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3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33.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35.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6.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

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
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

· 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 ·
지원

38. 기부 · 자원봉사활동 · 기업

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
의 인적 · 물적 자원 개발 · 육
성에 관한 사항

3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

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0. 의사상자 예우 · 지원에 관

한 사항

4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
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
항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
련 정책의 수립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
립 및 조정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
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
비스에 관한 사항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
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 등에 관한 사항
11.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
12.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
·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u>관한 사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